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21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정태호 · 김주영 · 맹성규
이학영 · 진성준 · 이연희
박민규 · 이주희 · 이수진
이광재 · 김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자단체, 그 밖의”를 “사용자단체,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서류제출 요구, 의견 청취 및 조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 -----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 ----- ----- ----- ----- ----- -----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
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
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신 설>

-사용자단체,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 이 경
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이
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u>른 조사, 서류제출 요구, 의견 청취 및 조치의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u>
--	---